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고정357 판결 모욕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정357 모욕

피고인 A

검사 박춘광(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18. 5. 31.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q, 28 M)와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동 상하층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0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전에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답글로 위 카페에 접속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 ···· 우리 아파트 사는 분은 아시겠지만 돼지 냄새나게 생긴 기름진 우리아랫집 아줌마가 푸짐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이기적이고 예민한데 어찌나 옷도 촌스럽고 우중충하게 입는지 가끔 눈에 보이면 답답해서 숨이 턱 막히고 표정까지 우울하고 음침해서는 사람을 살살 쳐다보고 또라이라고 욕을 하는데 순간 그 입에서 썩은 구취가 확 나서 토할 뻔했고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수사보고(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글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저지른 사이버 테러에 대항 항하여 피고인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 즉 '아랫글 C아파트 4층의 개념없는 인간의 주인공입니다', '돼지 냄새나게 생긴 기름진 우리 아랫집 아줌마', '푸짐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이기적이고 예민한데 어찌나 옷도 촌스럽고 우중충하게 입는지', '그 입에서 썩은 구취가 확 나서 토할 뻔 했고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에 글을 올린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로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하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한 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피고인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작성한 원래 글의 앞과 뒤에 '마지막으로 남이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을...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 1 ...논다고 내가 생각한 사실이 생각에서 그치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적시한다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그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을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연관성(피고인이 사용한 '돼지 냄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새나게 생긴 기름진 우리 아랫집 아줌마' 등의 표현은 그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김지후